

## 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<p><b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b></p> <p>①~③(생략)</p> <p>④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~8.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<b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b></p> <p>①~③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~8.(현행과 같음)</p> <p><u>9. Cp-E클래스 수익증권 :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</u></p> <p><u>10. Cp2클래스 수익증권 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</u></p> <p><u>11. Cp2-F클래스 수익증권 : 퇴직연금 집합투자기구 및 퇴직연금보험</u></p> <p><u>12. S-P클래스 수익증권 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결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u></p>
<p><b>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</b>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</p>	<p><b>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</b>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</p>

<p>1.~8.(생략) &lt;신설&gt; &lt;신설&gt; &lt;신설&gt; &lt;신설&gt; ②~⑤(생략)</p>	<p>1.~8.(현행과 같음) <u>9. Cp-E클래스 수익증권</u> <u>10. Cp2클래스 수익증권</u> <u>11. Cp2-F클래스 수익증권</u> <u>12. S-P클래스 수익증권</u> ②~⑤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34조(이익분배)</b>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에서 평가이익을 차감한 나머지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. ②(생략)</p>	<p><b>제34조(이익분배)</b>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<u>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.</u> ②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40조(보수)</b> ①·②(생략)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목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1.~8.(생략) &lt;신설&gt;  &lt;신설&gt;</p>	<p><b>제40조(보수)</b> ①·②(현행과 같음)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목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1.~8.(현행과 같음) <u>9. Cp-E클래스 수익증권</u> <u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4.0</u> <u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4.0</u> <u>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</u> <u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</u> <u>10. Cp2클래스 수익증권</u> <u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4.0</u> <u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6.0</u> <u>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</u></p>

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<u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</u></p> <p><u>11. Cp2-F클래스 수익증권</u></p> <p><u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4.0</u></p> <p><u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25</u></p> <p><u>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</u></p> <p><u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</u></p> <p><u>12. S-P클래스 수익증권</u></p> <p><u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4.0</u></p> <p><u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2.0</u></p> <p><u>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</u></p> <p><u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</u></p>
<p><b>제42조(환매수수료)</b></p> <p>①(생 략)</p> <p>②환매수수료는 ‘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‘이익금’이라 한다)’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Cp클래스 : 환매수수료 없음</p> <p>③(생 략)</p>	<p><b>제42조(환매수수료)</b>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환매수수료는 ‘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‘이익금’이라 한다)’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Cp클래스 · <u>Cp-E클래스 · Cp2클래스 · Cp2-F클래스 · S-P클래스</u> : 환매수수료 없음</p> <p>③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51조(수익증권의 통장거래)</b></p> <p>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“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” (Cp클래스의 경우에는 “연금지축계좌설정약관”)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.</p>	<p><b>제51조(수익증권의 통장거래)</b></p> <p>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“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” (Cp클래스, <u>Cp-E클래스, S-P클래스</u>의 경우에는 “연금지축계좌설정약관”)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.</p>
<p>&lt;신 설&gt;</p>	<p><u>부 칙</u></p> <p>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5년 7월</u></p>

17일부터 시행한다.